

## 한국어교원 관련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조문

| 국어기본법   | 국어기본법 시행령   |
|---|---|
| <p>제19조(국어의 보급 등)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(이하 “재외동포”라 한다)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13조(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)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(이하 “한국어교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1. 한국어교원 1급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,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(이하 “한국어교육경력”이라 한다)이 5년 이상인 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2. 한국어교원 2급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가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,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나.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,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다.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,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3. 한국어교원 3급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가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,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나.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,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</p> |

| 국어기본법 | 국어기본법 시행령  |
|-------|--|
|       | <p>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.</p> <p>제14조(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)</p> <p>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(이하 “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,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.</p> <p>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·시행·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비영리법인일 것</li> <li>2.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</li> <li>3.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</li> </ol> |

| 국어기본법 | 국어기본법 시행령  |
|-------|--|
|      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|

[별표 1]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(제13조제1항관련)

| 번호 | 영역             | 과목 예시   |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|      |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|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|
|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|   | 주전공 또는 복수 전공   | 부전공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1. | 한국어학           | 국어학개론, 한국어음운론, 한국어문법론, 한국어어휘론, 한국어의미론, 한국어화용론(話用論), 한국어사, 한국어어문규범 등   | 6학점            | 3학점  | 3~4 학점            | 30시간                |
| 2. |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| 응용언어학, 언어학개론, 대조언어학, 사회언어학, 심리언어학, 외국어습득론 등   | 6학점            | 3학점  |                   | 12시간                |
| 3. |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| 한국어교육개론, 한국어교육과정론, 한국어평가론, 언어교수이론, 한국어표현교육법(말하기, 쓰기), 한국어이해교육법(듣기, 읽기), 한국어발음교육론, 한국어문법교육론, 한국어어휘교육론, 한국어교재론, 한국문화교육론, 한국어한자교육론, 한국어교육정책론, 한국어번역론 등 | 24학점           | 9학점  | 9~10 학점           | 46시간                |
| 4. | 한국 문화          | 한국민속학, 한국의 현대문화, 한국의 전통문화, 한국문학개론, 전통문화현장실습, 한국현대문화비평, 현대한국사회, 한국문학의 이해 등   | 6학점            | 3학점  | 2~3 학점            | 12시간                |
| 5. | 한국어 교육 실습      | 강의 참관, 모의 수업, 강의 실습 등   | 3학점            | 3학점  | 2~3 학점            | 20시간                |
|    | 합계             |   | 45학점           | 21학점 | 18학점              | 120시간               |

[별표 2]

**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 
검정방법(제14조제2항관련)**

| 영역        | 배점     |     | 시간   | 방법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|----|
| 별표 1의 제1호 | 90     | 120 | 100분 | 필기 |
| 별표 1의 제2호 | 30     |     |      |    |
| 별표 1의 제3호 | 150    | 180 | 150분 |    |
| 별표 1의 제4호 | 30     |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| 300점   |     | 250분 |    |
| 구술시험      | 합격/불합격 |     |      | 면접 |

[별지 제1호 서식]

|   |
|---|
| <p>제 호</p> <p style="font-size: 1.2em; font-weight: bold;">한국어교원 자격증</p> <p>이 름</p> <p>주민등록번호</p> <p>자 격</p> <p>「국어기본법」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<br/>규정에 의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<br/>수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(직인)</p> |
| <p>1. 검정 종별</p> <p>2. 법정 해당 자격기준<br/>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자격기준 제 호 목</p> <p>3. 수여 조건</p>   |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)